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2호 2023. 4. 12.(수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55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3
- 하동군 조례 제2557호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558호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3
- 하동군 조례 제2559호 하동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560호 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59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3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91호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 . 26

예 규

- 하동군 예규 제27호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4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8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56
- 하동군 고시 제2023-84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58
- 하동군 고시 제2023-86호 하천 점용 변경(명의이전) 허가고시 62
- 하동군 고시 제2023-8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곡지구) . 63
- 하동군 고시 제2023-9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65
- 하동군 고시 제2023-93호 서해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66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529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 하동군 공고 제2023-530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6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566호 하동군 하수도장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90

회									
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56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기업 전·현직 임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문관”을 “자문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⑥ · ⑦ (생략)</p> <p><u><신 설></u></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한 다.</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구성) ① <u>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하동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u></p> <p>② <u>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내외 기업 전·현직 임원</u> 2. <u>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u> 3. <u>산업계, 대학교수 등 경제·투자유치 관련 전문가</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④ <u>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u></p>

<신 설>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및 협의 회)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 등을 하동군 투자유치자 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를 촉 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관 및 협의회의 활동을

다.

⑤ 자문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⑥ 군수는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 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2(자문단의 기능) 자문단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 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문관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자문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
----- 자문단

-----.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송 철



하동군 조례 제 2557 호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소재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하동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중장년 지원 시책

3. 중장년 지원 재원조달

4.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 상담·교육·홍보

2. 중장년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3. 중장년 취업·창업 및 일자리 지원

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 문화·여가활동 지원

6.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사업의 교육·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중장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직전 회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58 호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④ 군수는 법 제20조에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조례 제 2559 호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하동군 조례 제 2560 호

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3호·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인 공급을 위해 하동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규칙 제 1259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투자유치자문관 및 협의회)</u></p> <p><u>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및 투자유치협의회위원(이하 “협의회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u> <u>2. 투자유치 관련 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u> <u>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u> <u>4. 그 밖에 중앙 및 도의 투자유치전문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p><u>②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③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u></p>	<p><u><삭 제></u></p>

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군수는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이 위촉 해제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⑥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훈령 제 391 호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월말”을 “8월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월말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절차 및 기간은 제3항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전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구비서류”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 구비 서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명령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시간외 근무 사전명령서”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로기록부”로 한다.

제14조 중 전단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로 하고, 후단에 “대체 할 수 있다”를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휴가원”을 “별지 제14호서식의 휴가원”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30조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퇴직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별지 제17호서식

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제3항 관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제4항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 × 4cm) (3.5cm × 4.5cm)
	(한문)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영문)	이 메 일		
구분(직종)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 <input type="checkbox"/> 단시간			
소 속		업 무		
최초고용일		현부서고용일		
주 소				
실거주지				
등록기준지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비상연락처			관 계	
결격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 <input type="checkbox"/> 미해당(결격사유 없음)		조 회 일	
병 역 <input type="checkbox"/> 군필 /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 <input type="checkbox"/> 여성	병역기간	역종(군별)	최종계급	미필사유
장 애	장애유형		장애정도	<input type="checkbox"/> 경증 / <input type="checkbox"/> 중증
정당·단체 활 동	기 간	정당·단체명	기 간	정당·단체명
	~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기 간	학 력		전공부문·과목
자격·면허	취득일	자격·면허명		시행기관

(앞쪽)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업무	주당 근무시간
교육훈련	기간	이수시간	교육명	교육기관
포상·서훈	연월일	포상·서훈명	시행청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종류	처분기관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제10조제5항 관련)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전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근로계약기간	근무처 및 담당업무	비 고
	0000.00.00 (00세)	00.00.00 ~ 00.00.00	▷ ▷	고용종료 1개월 전 통보

귀하께서는 우리 군 ○○○○과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 후로 도래함에 따라, 만료 후의 구직활동이나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간만료됨을 사전 통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00월 00일

○○○○○ 부서장

○○○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제11조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부수	제출확인	비고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 카드	1		별지 제8호 서식 (증명사진 부착 포함)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까지 표시 필요 남자의 경우 병적 사항 기록 필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1		별지 제6호 서식
증명사진	1		3×4cm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		별지 제7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경력증명서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채용신체검사서	1		필요한 경우에 한함

위 제출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출자(채용등록자)

(서명 또는 인)

접수자(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제14조 관련)

기간제 근로자 근무 상황부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무일							
근무자							
담당자							
비 고							
근무일							
근무자							
담당자							
비 고							
근무일							
근무자							
담당자							
비 고							
근무일							
근무자							
담당자							
비 고							
근무일							
근무자							
담당자							
비 고							

※ 결근사유 등은 비고란에 작성

총지급액	1일지급액	근무일수	공제액	실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급여 등을 청구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사용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14호 서식】 (제21조 관련)

휴 가 원

	결재	담당자	담당주사	사용부서장
소 속				
성 명				
기 간 ~		(일 간)	
휴가사유				
기타사항 (연락처 등)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읍·면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제30조 관련)

재직 ·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 소					
<input type="checkbox"/> 재직 <input type="checkbox"/> 경력	근무기간	직종	근무부서	업무내용	주당근무시간	
	~					
	~					
	~					
	~					
	~					
용 도						
상 별 사 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제37조제2항 관련)

퇴 직 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구분(직종)	
	근무기간 ~ (년 월)		
	주소(실거주지)			
퇴직사유				
퇴직희망일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제38조제2항 관련)

퇴직금 지급 신청서

		결재	담 당 자	담당주사	사용부서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구분(직종)	
	주소(실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신청사항	입사일자		퇴사일자		
	입사일자				
	퇴 직 금	금 원			
신청사유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제출서류(1) : 퇴직사항 증빙서류(퇴직원, 인사발령 통지 서류 등) ○ 제출서류(2) : 근로자 퇴직금 수령통장 사본(예금주명과 근로자 본인 반드시 일치)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전심사의 절차) ① 사용 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u>6월말</u> 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 획을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용부서 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u>7</u> <u>월말까지</u> 다음 각 호에 따라 심 사한다.</p> <p>1. ~ 4. (생 략)</p> <p>③ ~ ⑥ (생 략)</p>	<p>제6조(사전심사의 절차) ① ----- ----- <u>8월말</u>----- ----- ----- ----- ----- ----- ----- ----- ----- -----.</p> <p>② ----- ----- <u>다</u> <u>음</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채용절차)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채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소속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u> <u>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선발</u> <u>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u> <u>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u> <u>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u> <u>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한</u> <u>다)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u> <u>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u> <u>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절차 및</u></p>

④ (생 략)

제10조(근로계약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인사기록카드 서류의 원본을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채용통보)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구비 서류에 따라 작성된 원본

기간은 제3항과 동일하게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근로계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하동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8호 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

-----.

⑤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전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통보) -----

-----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록구비서류-----

을 부서 내에 보관하고 관련 사
본 일체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장근로)

- ① (생략)
- ② 근로자가 시간외근무 또는 휴
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명령
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간외
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
록·관리(전자형태의 근무상황관
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대
체 가능)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14조(근무상황부 작성 등) 근로
자의 출·퇴근, 결근 등 근무상황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용
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에 해
당 근무일을 기준으로 서명 기
재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근
무종료일(근로계약에 따라 1월
을 초과하여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에 사용부서의 장까지 결재
를 받은 후 이를 사용부서 내에
관리·보관한다. 다만, 전자형태
의 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

제13조(연장근로)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별지 제1
1호서식의 시간외 근무 사전명
령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
외근로기록부-----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근무상황부 작성 등) ----

-----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상황부----

관리하는 경우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휴가원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공가) (생 략)

- 1. ~ 3. (생 략)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5.·6. (생 략)

제30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재직·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또는 전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상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당연퇴직) ① (생 략)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사용부서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별지 제14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휴가의 허가) -----

-----별지 제14호서식의 휴가원-----
-----.

제24조(공가)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 5 조

5.·6.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직·경력 증명서-----

-----.

제37조(당연퇴직) ① (현행과 같음)

- ② -----

호서식의 퇴직원을 제출하여
야 한다.

제38조(퇴직금) ① (생 략)

②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
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하
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의 퇴직원

-----.

제38조(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7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

-----.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4월 12일

하 동 군 수 하 승 철



하동군 예규 제 27 호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 등”이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폭행 또는 민원 처리 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
2.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3.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음성의 녹음
-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5.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 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외장하드를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위법행위 등을 하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전송 및 저장할 것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단, 제12조에 따른 증거물 제작시는 예외로 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

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담당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

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빼앗김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것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보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

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 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해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제작 및 제출)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2.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지침
3.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동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3 - 83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3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474-10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419 외 121건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효력발생일	비고
별 지 참 조(12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3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474-10		20230331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708-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94-1		20230331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83-1, 383-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7		20230331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334-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142		2023033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334-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146		2023033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334-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144		2023033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40-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69		20230331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4-2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83		20230331	내도와 청도의 자연마을 이름을 합성하여 내도청도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35-1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89-6		20230331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50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무능골길 63-39		20230331	계곡이 깊고 경관이 아름다워 중국의 무릉도화에 비유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3-84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3.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4637	35-14-42.1187	127-42-34.5080	중부	294510.32	264583.63	733.184	청암면 목계리 1545-2	2023.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38	35-14-40.3262	127-42-35.6400	중부	294455.28	264612.64	725.193	청암면 목계리 1544-14	2023.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39	35-14-38.2436	127-42-37.4289	중부	294391.43	264658.33	713.006	청암면 목계리 1544-23	2023.03.0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0	35-03-23.9700	127-47-09.7234	중부	273663.15	271706.91	9.406	적량면 고절리 1249	2023.03.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1	35-03-25.1518	127-47-13.3596	중부	273700.30	271798.76	10.367	적량면 고절리 524-3	2023.03.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2	35-03-26.6565	127-47-19.1248	중부	273747.83	271944.49	18.334	적량면 고절리 1249	2023.03.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3	35-10-02.2104	127-54-37.1959	중부	286032.84	282934.27	70.355	옥종면 대곡리 1040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4	35-09-58.1732	127-54-37.7865	중부	285908.55	282950.35	72.601	옥종면 대곡리 1061-1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5	35-09-58.6252	127-54-34.5064	중부	285921.73	282867.21	76.748	옥종면 대곡리 553-3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6	35-11-02.6904	127-49-00.0354	중부	287822.69	274386.41	342.900	옥종면 회신리 산102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7	35-11-02.3214	127-49-01.6479	중부	287811.65	274427.30	347.390	옥종면 회신리 산103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8	35-11-02.5189	127-49-06.2679	중부	287818.70	274544.15	315.397	옥종면 회신리 산97	2023.03.0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49	35-02-28.6785	127-46-59.8861	중부	271957.22	271471.22	2.486	하동읍 목도리 530	2023.03.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0	35-02-26.3657	127-46-56.6296	중부	271885.29	271389.02	6.166	하동읍 목도리 831-1	2023.03.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1	35-02-18.1306	127-46-58.0512	중부	271631.79	271427.04	8.363	하동읍 목도리 113-4	2023.03.0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2	35-01-20.0439	127-54-11.1174	중부	269934.37	282420.12	7.544	진교면 고룡리 863-4	2023.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3	35-01-11.8486	127-54-13.7040	중부	269682.40	282487.97	7.636	진교면 고룡리 10	2023.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4	35-01-09.4152	127-54-15.4462	중부	269607.80	282532.83	9.473	진교면 고룡리 산32-4	2023.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5	35-08-46.2508	127-43-32.1397	중부	283553.48	266120.77	222.107	악양면 신성리 산81-7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6	35-08-45.1818	127-43-32.8406	중부	283520.67	266138.75	222.266	악양면 신성리 산85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7	35-08-43.8936	127-43-32.3654	중부	283480.88	266127.01	226.054	악양면 신성리 산81-7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8	35-03-55.0560	127-44-29.2304	중부	274590.02	267632.71	7.768	하동읍 광평리 455-7	2023.03.15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59	35-03-54.5294	127-44-31.3998	중부	274574.20	267687.80	8.531	하동읍 광평리 455-7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0	35-03-52.7662	127-44-33.2887	중부	274520.22	267736.07	11.851	하동읍 광평리 378-2	2023.03.15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1	35-11-24.7988	127-48-56.7693	중부	288503.37	274298.18	302.418	옥종면 회신리 851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2	35-11-23.7821	127-48-59.2115	중부	288472.54	274360.22	289.017	옥종면 회신리 산111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3	35-11-24.4070	127-49-02.1968	중부	288492.42	274435.60	278.269	옥종면 회신리 907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4	35-09-44.1148	127-48-55.6231	중부	285400.17	274294.63	232.861	횡천면 전대리 1409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5	35-09-42.1375	127-48-54.9258	중부	285339.09	274277.48	222.506	횡천면 전대리 1280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6	35-09-39.5973	127-49-02.1153	중부	285262.30	274460.08	217.613	횡천면 전대리 1250-1	2023.03.15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7	35-08-57.8598	127-52-50.8995	중부	284025.41	280261.76	147.281	옥종면 정수리 297-1	2023.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8	35-09-00.1932	127-52-52.0822	중부	284097.59	280291.06	145.070	옥종면 정수리 337-2	2023.03.16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69	35-09-05.1539	127-52-51.2925	중부	284250.29	280269.72	141.926	옥종면 정수리 323-2	2023.03.16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0	35-03-55.0376	127-46-41.3095	중부	274614.95	270979.40	54.697	적량면 고절리 산199-6	2023.03.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1	35-03-52.8336	127-46-41.0911	중부	274546.99	270974.39	44.820	적량면 고절리 1305	2023.03.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2	35-03-50.4679	127-46-38.3979	중부	274473.55	270906.72	36.590	적량면 고절리 1305	2023.03.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3	35-05-15.8739	127-45-57.7571	중부	277097.64	269856.70	65.144	적량면 관리 526-1	2023.03.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4	35-05-15.9323	127-45-56.0566	중부	277099.10	269813.61	67.278	적량면 관리 952	2023.03.17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5	35-05-14.9468	127-45-50.9319	중부	277067.74	269684.03	73.166	적량면 관리 515-2	2023.03.17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6	35-14-07.3593	127-38-25.7824	중부	293396.33	258302.11	119.474	화개면 용강리 264	2023.03.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7	35-14-05.8546	127-38-26.4324	중부	293350.07	258318.83	118.240	화개면 용강리 264-1	2023.03.20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8	35-14-04.3840	127-38-25.8212	중부	293304.64	258303.68	118.236	화개면 용강리 318	2023.03.20	맨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79	35-07-14.0166	127-43-28.4602	중부	280710.30	266048.31	398.020	하동읍 흥룡리 산94	2023.03.20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0	35-07-14.2213	127-43-31.4955	중부	280717.17	266125.12	414.641	하동읍 흥룡리 4	2023.03.20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1	35-07-12.8176	127-43-29.8434	중부	280673.60	266083.61	411.569	하동읍 흥룡리 산94	2023.03.20	기타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2	35-14-28.7002	127-44-34.4714	중부	294118.97	267619.72	614.192	청암면 목계리 산157-1	2023.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3	35-14-29.4327	127-44-30.9889	중부	294140.88	267531.50	599.620	청암면 목계리 396-1	2023.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4	35-14-29.8533	127-44-28.7476	중부	294153.42	267474.73	591.341	청암면 목계리 397-1	2023.03.22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5	35-12-32.9791	127-52-34.0958	중부	290651.41	279778.00	108.940	옥종면 안계리 168-2	2023.03.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6	35-12-37.2111	127-52-32.1398	중부	290781.40	279727.38	111.716	옥종면 안계리 88-2	2023.03.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7	35-12-35.2176	127-52-29.0464	중부	290719.27	279649.68	115.277	옥종면 안계리 601	2023.03.23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8	35-11-32.4451	127-52-06.0390	중부	288779.58	279084.63	102.577	옥종면 월흥리 556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89	35-11-34.7439	127-52-09.1700	중부	288851.12	279163.22	96.543	옥종면 월흥리 553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0	35-11-35.5183	127-52-11.1009	중부	288875.41	279211.87	94.332	옥종면 월흥리 127-3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1	35-11-38.1111	127-52-12.4033	중부	288955.61	279244.12	89.098	옥종면 월흥리 120-6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2	35-02-55.4242	127-50-39.9334	중부	272826.96	277041.33	28.042	양보면 운암리 127-1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3	35-02-51.1256	127-50-42.4362	중부	272695.02	277105.88	26.854	양보면 운암리 222-2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4	35-02-46.5070	127-50-37.1746	중부	272551.56	276973.74	26.242	양보면 운암리 150-3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5	35-12-37.4442	127-52-39.5729	중부	290790.24	279915.33	108.912	옥종면 안계리 617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6	35-12-35.3621	127-52-41.9288	중부	290726.60	279975.48	107.083	옥종면 안계리 605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7	35-12-32.8969	127-52-42.3672	중부	290650.72	279987.25	104.984	옥종면 안계리 276	2023.03.28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8	35-10-15.2816	127-54-40.1517	중부	286436.37	283005.38	63.690	옥종면 안계리 456-9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699	35-10-18.8381	127-54-40.1743	중부	286545.98	283004.94	77.882	옥중면 안계리 산101-2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0	35-10-20.6406	127-54-41.2304	중부	286601.78	283031.16	86.814	옥중면 안계리 산101-2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1	35-10-21.9111	127-55-09.1753	중부	286647.44	283737.96	59.317	옥중면 대곡리 502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2	35-10-18.7380	127-55-13.7370	중부	286550.72	283854.30	58.752	옥중면 대곡리 121-7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3	35-10-15.3482	127-55-16.6777	중부	286446.94	283929.69	57.714	옥중면 대곡리 산55-3	2023.03.29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4	34-58-03.7366	127-46-43.3729	중부	263789.00	271116.12	35.467	금성면 고포리 120-5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5	34-58-03.3921	127-46-42.0274	중부	263778.12	271082.06	31.701	금성면 고포리 122-1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6	34-58-03.8021	127-46-39.9711	중부	263790.35	271029.80	31.438	금성면 고포리 460-3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7	35-08-50.1490	127-51-13.8032	중부	283766.35	277806.04	158.850	북천면 화정리 821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8	35-08-51.0705	127-51-11.3796	중부	283794.22	277744.44	164.133	북천면 화정리 1659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지적도근점	W4709	35-08-50.3511	127-51-05.0130	중부	283770.67	277583.48	181.854	북천면 화정리 1281	2023.03.31	철재	세계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제2023 - 86호

하천 점·사용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5조 권리 의무의 승계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4. 03.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06-23호
- 2. 허가연월일 : 2023. 04. 04.
- 3. 점·사용의 목적 : 식물의 재식의 목적으로 하는점용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옥종면 병천리 941-27번지 (33㎡)
- 5. 점·사용의 기간 : 2021. 04. 13. ~ 2026. 04. 12.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30, 하기웅

구분	신청인	면적(㎡)	비고
당초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30, 하계두	33	권리의무이전
변경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30, 하기웅	33	

하동군 고시 제2023 - 87호

구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내용

- 지정현황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 정 사 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구곡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7-5 일원	침수 위험지구	나	65,378	- 기존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월류 침수피해 발생 - 제내지는 주거지 및 농경지(논,밭,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월류 발생시 침수피해 예상 - 현재 구곡배수펌프장의 펌프용량 대비 유수지 용량이 충분하지 않고 펌프장 시설 능력 부족등으로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위험	신규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구곡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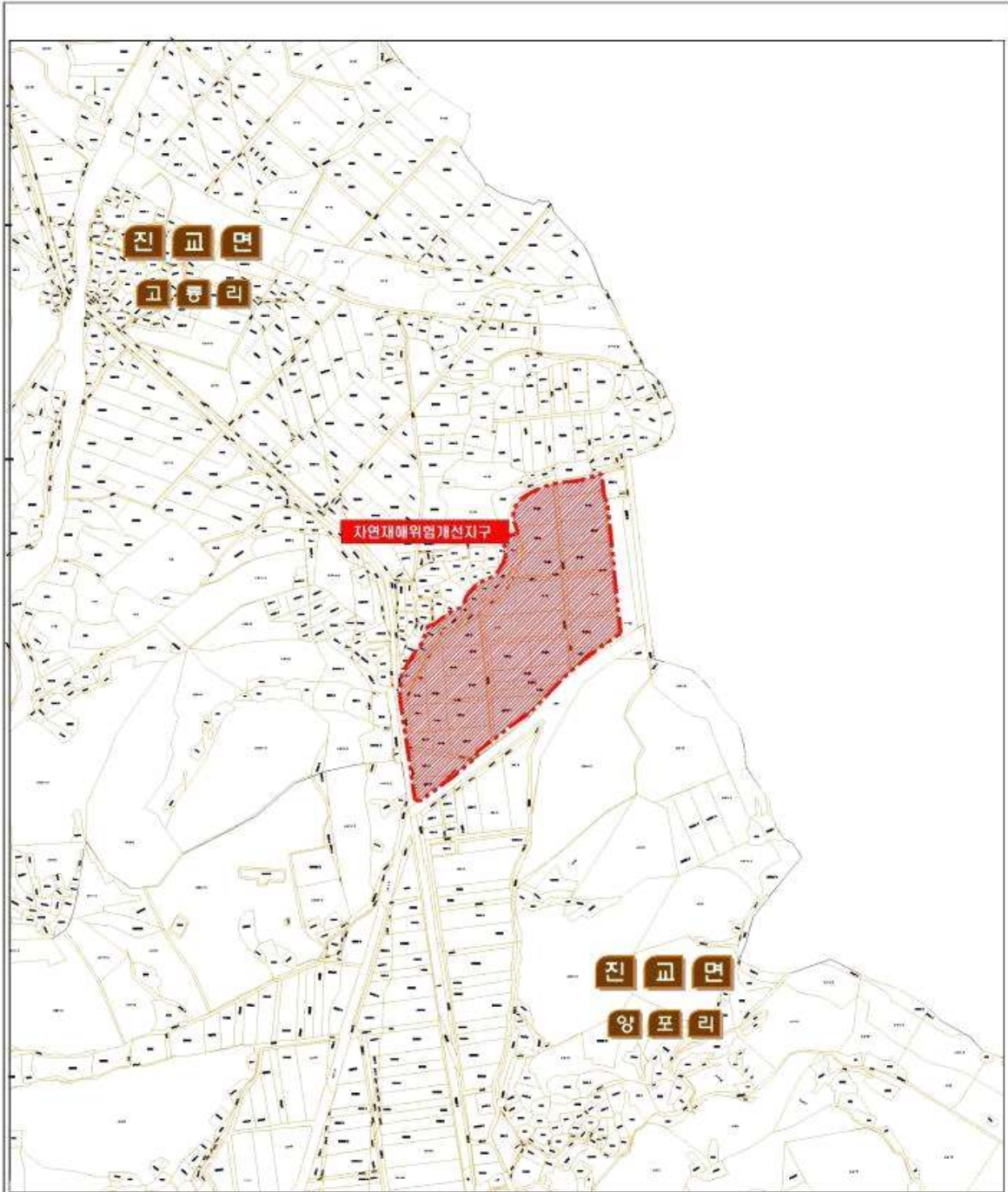
2. 기타 사항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비치 : 하동군 건설교통과

나. 기타 의문 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055) 880-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곡지구 지형도면

구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도



구분	입안 및 결정경과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속	케이에스엠기술(주)		하동군 건설교통과	
직위	-	주무관	담당주사	안전총괄과장
직명	시설책임기술자	지면시설주사	지면시설주사	지면시설사무원
성명	김정필	한정훈	배대근	이성수
확인인				

- 지정권자 : 하동군수
- 지정일자 :
- 고시년도 :
- 고시번호 : 하동군고시 제 2023 - 호
- 작성자 : 케이에스엠기술(주)
- 작성년월일 : 2023년 03월 일
-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 하동군수

색인도

1

하동군 제2023-3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법률」 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4. 1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3호
2. 허가연월일 : 2023. 04. 10.
3. 점·사용의 목적 : 지역순환시설(고물상)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65-20번지, 97㎡
5. 점·사용의 기간 : 2023.04.10.~ 2028.04.09.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806-10번지, 김동*

하동군 고시 제 2023 - 93호

서해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하 동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서해량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856 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1,780㎡	붕괴위험지역 지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동군 안전총괄 과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

- 사면재해위험도에 의한 평가결과 72점(D등급)으로 판정
- 주거지 배후사면 풍화 발생, 배부름현상 등으로 사면 붕괴 발생
- 암반비탈면 풍화에 의한 암괴 탈락으로 낙석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인공비탈면(옹벽, 석축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하동군 안전총괄과)과 협의하여야 함.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23년 04월 11일

6. 문의처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880-2253)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1부. 끝.

□ 지형도면



□ 현황사진



하동군 공고 제2023-529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2. 제안 이유 :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기한 연장 등 군민의 권익향상과 유족 부담 경감 및 화장을 장려하여 화장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 못한 영아 지원 신설(안 제3조제4호)
 - 지원제외대상인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삭제(안 제4조제3항)
 - 신청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 사실관계확인 및 처리일자 7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장기·시신 기증, 천재지변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한 30일 연장 신설(안 제6조제5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가족정책과, 전화 880-2334,
FAX 880-2349, e-mail h800412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0일”을 “18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장증명서”를 “화장증명서, 재매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2.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화장장려금 <input type="checkbox"/>사망 <input type="checkbox"/>개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ex-grow: 1;"> 지원 신청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처리기간 20일 </div> </div>						
사망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화장 장소			화 장 연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지급계좌번호 : 거래은행 : 예금주명 :					
담당자 확 인	연고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input type="checkbox"/> 개장 후 재매장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담당자 확인 : (서명)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 구비서류 1. 화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2. 재매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장 화장인 경우) 3. 통장사본						

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지원대상)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 고자</u></p>
<p>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2. (생 략)</p> <p>3. <u>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u></p> <p>4. (생 략)</p>	<p>제4조(지원제외) ----- ----- -----.</p> <p>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u>90일</u>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 장신고증명서, <u>화장증명서</u></p>	<p>제6조(지원신청) ①----- ----- ----- ----- 180 일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

<신설>

----- 화장증명서, 재매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

----- 20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질병·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 련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하동군 공고 제2023-530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2. 제안 이유 : 장기기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에 관해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금오영당을 이용 납부기준을 상세
화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 이용 장려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봉안당 사용자의 의무 변경(안 제12조)
 -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상세 변경(안 별표)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감면 대상 신설(안 별표)
 - 무연고 안치단 사용료 등 사용 기준 신설(안 별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인은 2023년 4월 25일까지 하동군(참조 : 가족정책과, 전화 880-2334,
FAX 880-2349, e-mail h800412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을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치단의 사용기간”을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중 “2년”을 “5년”으로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을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로 한다.

제9조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소”를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봉안당 사용료 등 납부기준 및 환급비율

1. 기본 사용료 등

구 분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인 조 대리석 안치단	1구당 /30년	100,000원/군내 거주자 30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500,000원/상기자 외	1구당 /30년	150,000원
목 재 안치단	1구당 /30년	120,000원/군내 거주자 36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800,000원/상기자 외	1구당 /30년	150,000원
무연고 안치단	1구당/ 5, 10년	120,000원	1구당/ 5, 10년	150,000원

가. 군내 거주자

-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 군내에 10년 이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함.

다. 무연고 안치단 사용자(사용기간)

- 연고자, 행려사망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5년)
- 무연분묘 개장유골(10년)

2. 상세 사용료 등

가. 대상별 사용료 등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관내에 사설 봉안시설 및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하기 위해 임시로 안치하는 사용자	연 1만원	연 5천원	최대 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액 감면	기본관리비	기본사용기간
자치단체 시행의 관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전액 감면	전액 감면	10년
관내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개장 유골	전액 감면	기본관리비	10년
군수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관내 무연고자 및 관내에서 사망한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전액 감면	전액 감면	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광주민중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50% 감경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전액 감면	전액 감면	기본사용기간

나. 안치단 유형 관련 사용료 등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납부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인 경우)	대상별 사용료 등	기본관리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최초 사용신고 시 부부단 사용 시 (사용료 등 감면 및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	20% 감경	기본관리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료 등 기준 2명분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1구와 신규 안치할 1구를 부부단 사용 시	기본사용료 또는 대상별 사용료	기본관리비	신규 사용자 1명분	개인단 안치된 유골 사용기간 기준
개인단에 안치된 2구를 부부단 사용 시	없음	없음	없음	먼저 들어온 유골 사용기간 기준

다. 사용기간 만료 시

구 분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기간
	사용료	관리비	납부	
사용자 유골 반환 시	없음	1년단위 관리비	개인단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	만료일자부터 기간산정

3. 사용기간 연장(재사용) 시 사용료 등

-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1구 관리비만 납부

4. 사용료 등 환급비율

가. 사용료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나. 관리비 : 환급 없음

다. 임시로 안치한 유골 반환 시 환급 없음

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
상자

<삭 제>

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삭 제>

8.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
역명문가

<삭 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
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
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

④ 봉안당 사용신고 시 부부(夫
婦)단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
료 및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하여
야 하며 재계약시부터는 부부 중
먼저 들어온 유골을 기준일로 하
여 1구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
다.

<삭 제>

⑤ 술상.양포공동묘지정비사업으
로 인해 안치되는 유골에 대해서
는 15년 동안 사용료 및 관리비를
면제한다.

<삭 제>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
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

제7조(사용기간) ① -----
---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으로 화장하였을 경우는 군수가 봉안묘(술상공동묘지내 위치)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

안치단의 사용기간 -----

----- .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삭 제>

③ -----

----- 5년 이내-----

-----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

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
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
계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
-----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
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
계하는 경우 -----
-----.

제12조(사용자의 의무) -----

-----.

1. ----- 주소 또는 연락처-----
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
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관 련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 하동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2. 타 지역거주자로서 하동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

하동군 공고 제 2023- 566호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545호, 2022.10.04.)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10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3일간 (2023.04.10.~2023.04.17.)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
나. 이메일 : 47593114@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업체별)(하동군 홈페이지 별첨)
3. 업무중복도 의견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대상자					의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
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2023. . .

하동군수 귀하